

2025년도 KLPGA 임원 선출 관련 안내

2025년도 정기총회 시 임원선출(입후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5년도 KLPGA 임원선출 관련 안내

구분	내용
I. 선출시기	2025년도 KLPGA 정기총회 1. 일 시 : 2025년 3월 20일(목) 13:00 2. 장 소 :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
II. 선출대상	총 2명(이사 1명, 감사 1명) ※ 임기 1. 이사 : 4년(2025년 정기총회 ~ 2029년 정기총회) 2. 감사 : 3년(2025년 정기총회 ~ 2028년 정기총회)
III. 입후보 등록	[등록기간] 2025년 02월 24일(월) 09:00 ~ 03월 04일(화) 17:00 (9일간) ※ 등록기간 외 추가 등록 불가 [등록방법] 1. 등록서류(소정 양식, 서명날인 필수) 가. 임원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나. 임원 입후보 이력서 1부 다. 임원 입후보 서약서 1부 라.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신원 확인용) 2. 등록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의 경우 임원 입후보자의 서류작성 후 스캔하여 송부 ※ 전화, 구두 신청 또는 소정양식 외 서류로 신청 시 무효 3. 등록기한 : 2025년 03월 04일(화) 17:00 까지(마감 이후 도착 시 무효) 4. 입후보서류 제출 전에 협회 회비 및 벌칙금 납부 여부 확인 필수 5. 미납금이 있을 경우 2025년 03월 04일(화) 17: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일시까지 미납 시 임원 입후보가 제한됨 cf) <u>KLPGA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3장(선거운영) 제9조(임원 입후보자 등록) 제3항</u> 임원 입후보자는 입후보서류 제출 전에 협회 회비 및 벌칙금 납부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미납금이 있을 경우 입후보 등록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 하여야 한다.
	[등록 제출처] 1. 우 편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221, 3층 KLPGA 사무국 2. 팩 스 : 02-539-6003 3. 이메일 : klpga@klpga.org ※ 문의 : KLPGA 사무국 차지해 과장(T. 02-560-4426)

구분	내용
IV. 선출 절차	<p>1. 선출 FLOW 임원 입후보자 등록→임원 입후보자 자격요건 확인→임원 입후보자 공고→임원 입후보자 인사 및 정견 발표(1인당 3분 이내, 가나다 순)→임원 선출 투표→임원 선출 확정</p> <p>2. 선출 근거 규정 가. KLPGA 정관 제3장(임원)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1) 본 회의 임원 중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외이사 선임은 이사 정수 내에서 3명 이내 범위로 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2) 본 회의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는 선출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하며 당해 이사의 임기까지 보장한다. 단, 위 각 직위에는 1회만 선임 가능하되, 위 타 직위 간에는 각 1회 선임 가능하다. 3) 본 회의 상근이사로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를 둘 수 있다. 4)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를 포함할 수 있다. 5) 임원은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회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임원 및 위원회 직위자(위원장, 위원 등)가 본 회의 선출직에 입후보 할 시, 반드시 현 직위에 대해 사퇴하고 입후보하여야 한다. 7)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는 이사회 승인을 얻은 KLPGA 임원 선거 관리 규정을 따른다.</p>
	<p>나. KLPGA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 1) 협회 임원은 정관 제3장(임원)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방식은 추대와 선거로 구분한다. 2) 본 규정은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적용되며, 적용되는 협회 임원의 범위는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 1인 포함),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단, 추대의 형식으로 선출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3) 협회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IV. 선출 절차	<p>3. 선거운동 기간 : 2025년 03월 06일(목) 09:00 ~ 03월 19일(수) 24:00(14일간)</p>
	<p>[선거운동 및 금지사항] KLPGA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3장(선거운영) 제12조(선거운동 및 금지사항) 가.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통보한 다음날로부터 선거가 개최되는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되면 그 자격은 상실된다. 1) 대의원에게 금전, 물품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2) 상대 입후보자를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서명날인 운동을 주동, 선동 또는 참여하는 행위 3)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및 회원 친목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5) 선거관리위원 및 협회 임직원은 특정인을 지지 옹호, 격려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6)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p>

구분	내용
IV. 선출 절차	<p>4. 투표원칙 : 무기명 비밀투표, 직접투표(1인 1투표) ※ [위임불가] <u>KLPGA 정관 제4장 제22조 3항</u> -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신의 의결권을 타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p>
	<p>5. 당선원칙 : 가. 임원선출은 최소 5표 이상을 획득한 자 중 다득표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나. 단독 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당선자를 확정한다. 다. 최종 순위자가 동표일 경우 동표인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라. 정관 제4장(총회) 제25조(총회의결 제한사유)에 따라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결 시 의장 또는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마. 최소 득표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선출 인원이 미달할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출한다.</p>
	<p>6. 투표방법 : 선거용지 투표(일반 투표)</p>
	<p>[총회의결 제한사유(투표 제한사유)] <u>KLPGA 정관 제25조(총회의결 제한사유)</u>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대의원이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비리로 기소되었을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②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③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4. 대의원이 협회의 운영 관련 이외의 비리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총회의결권을 제한한다.</p>
V. 입후보자 자격요건	<p>[임원 입후보자 자격] <u>KLPGA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3장(선거운영) 제8조(임원 입후보 자격)</u> 정관 제2장(회원) 제8조(회원의 의무), 제3장(임원)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제16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제17조(감사의 직무)에 부합하며, 학식과 덕망이 높고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었으며,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p>
	<p>[회원의 의무] <u>KLPGA 정관 제2장(회원) 제8조(회원의 의무)</u>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정관, 제반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가 정한 일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회가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임원의 선임제한] <u>KLPGA 정관 제3장(임원)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u> 1. 이사는 이사 상호간,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p>

구분	내용
V. 입후보자 자격요건	<p>[KLPGA 정관 제3장(임원)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p> <p>6. 본 회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임원 및 위원회 직위자(위원장, 위원 등)가 본 회의 선출직에 입후보 할 시, 반드시 현 직위에 대해 사퇴하고 입후보 하여야 한다.</p>
	<p>[이사의 직무] KLPGA 정관 제3장(임원) 제16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p> <p>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또는 결원 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전무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p>
	<p>[임원 입후보자의 결격 사유]</p> <p>KLPGA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3장(선거운영) 제10조(임원 입후보자의 결격사유)</p> <p>다음의 임원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후보 할 수 없으며,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격이 상실된다.</p> <p>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나. 미성년자 다. 금치산자, 한정치산 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바.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협회 상벌분과위원회 규정에 의해 징계(출장정지, 자격정지) 중이거나, 징계(출장정지, 자격정지)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협회 회비 및 벌칙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자. 당해연도 KLPGA 전(준) 회원 대상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p>
	<p>이사회, 회의 및 행사에 참석이 가능하여야 한다.</p>
VI. 기타	<p>[임원 입후보자의 사퇴] KLPGA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3장(선거운영) 제14조(임원 입후보자의 사퇴)</p> <p>1. 임원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사퇴신고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원 후보자의 사퇴 시기는 선거가 개최되는 총회 전일 18:00까지로 한다.</p>